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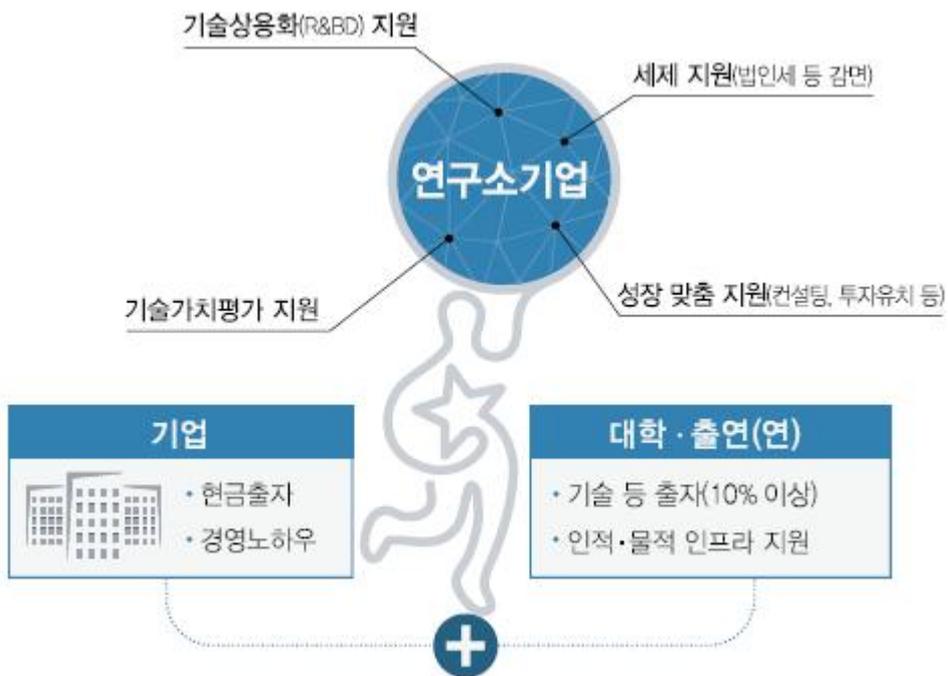
1

연구소기업 개요

□ 연구소기업 정의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시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의 해당 연구소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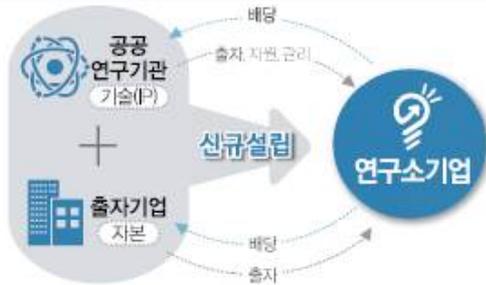
국세	지방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3년간 100%(최저한세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최저한세 부과)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면제

* 특구별 시세·도세·군세·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상이함

※ 감면 특례의 제한 및 감면범위는 각 관련 법령을 따르므로, 국세청 혹은 관련 지자체와 상의

□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연구소기업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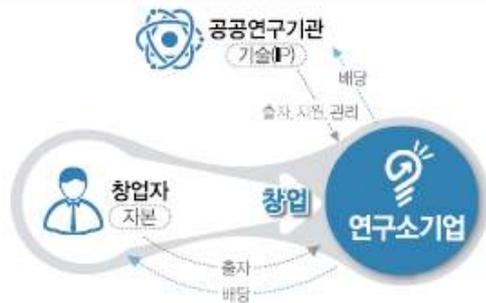
1 합작투자형

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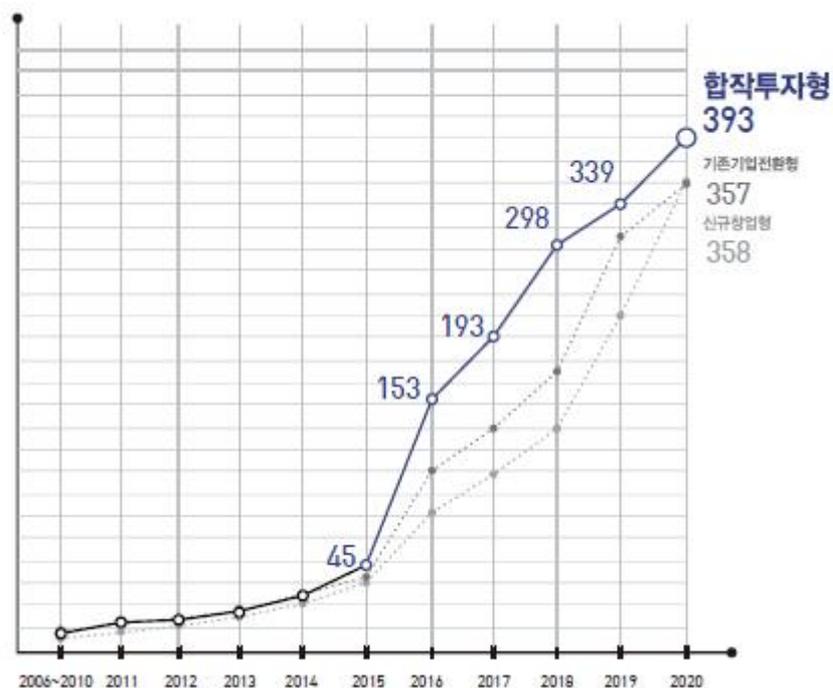
2 기존기업전환형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금 또는 현물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3 신규창업형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2

연구소기업 설립현황

□ 연도별 연구소기업 설립현황

○ 총 1,108개 社



□ 연구소기업 투자 수익률



한국원자력이 출자한
제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는
약 9631억 원의 주식가치(21.12기준)
최초 자본입금 대비 963배로 성장했다.

963배



1호 연구소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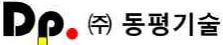
□ 연구소기업 매출액 및 고용성과

(단위 : 억원,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설립수	19	22	29	38	46	89	160	179	181	891	1,108	1,287
매출액	284	430	725	1,208	1,644	2,365	2,921	3,831	4,739	5,507	7,394	9,494
고용	237	272	310	524	639	850	1,194	1,908	2,542	3,470	3,910	5,103

□ 한국전력기술(주)

○ [제1호 연구소기업] 전환설립 완료('22.10월)

<p>제1호 (주)A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ACE: 이산화탄소 분리 특허 보유 벤처기업 ▪ 출자기술(특허):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 기술출자 및 연구소기업 등록 완료('22.10)
<p>제2호 (주)동평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평기술: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출자기술(특허): 사이버 보안을 위한 통신격리기 및 통신격리방법 ▪ 기술출자 및 연구소기업 등록 예정('23.10)

□ 한국전력공사

○ ('23.4월) 한국전력공사 연구소기업 15개社

<p>(주)플랫폼엔</p>	<p>대표자: 김형준 설립일: 2022.03.02 주요제품: IT컨설팅(SW, 클라우드 컨설팅 및 구축, SI/SM) 출자기술: 전력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등</p>	<p>유디포엠(주)</p> <p>대표자: 서정협 설립일: 2021년 2월 16일 주요제품: 디지털 영상 등 출자기술: 지하 전력구조물용 스캐닝 장치 등 3</p>
<p>G.GURU (주)지구루</p>	<p>에스이피(주)</p> <p>대표자: 강태영 설립일: 2021년 5월 11일 주요제품: 에너지안전관리 솔루션 출자기술: 마이크로그리드용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운영 장치 등 3</p>	<p>(주)트로닉스</p> <p>대표자: 박병덕 설립일: 2020.01.29(900호) 주요제품: 소프트웨어 개발 출자기술: IoT 시스템 등 특허 3건</p>
<p>(주)오투엔비글로벌</p>	<p>한국전력정보(주)</p> <p>대표자: 김홍중 설립일: 2019.12.13 주요제품: IT 서비스 출자기술: 전기차 충전 프로그램 등 지재권 7건</p>	<p>슈어데이터랩(주)</p> <p>대표자: 김준 설립일: 2019.11.11 주요제품: 전력 빅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 출자기술: 전력데이터기반 생활패턴 분석장치 등 특허 4건</p>
<p>(주)구조실험네트워크 STRUCTURAL TEST NETWORK</p>	<p>ITR (주)아이티알</p> <p>대표자: 장병훈 설립일: 2019.12.26 주요제품: 전력정보 데이터변환플랫폼을 이용한 진단, 예지, 거래서비스 출자기술: 블록체인기반 전력거래 등 특허 3건</p>	<p>한국에너지솔루션(주)</p> <p>대표자: 이상규 설립일: 2019.02.11 주요제품: 자가전원 작동식 IoT 융합 열화감시진단시스템 출자기술: 픽업코일을 이용한 전원공급장치 등 특허 2건</p>
<p>FOTLA 미래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p>	<p>ECOMOTION</p> <p>대표자: 송일근 - 한전 1호 기업 설립일: 2019.02.11 주요제품: 분산전원 연계, 계량오차 보정 등 출자기술: 영상전류 제한 등 특허 4건</p>	<p>REC's Innovation</p> <p>대표자: 임정민 설립일: 2022.09.16 주요제품: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수전해, ESS, EMS, PMS 출자기술: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독립형 에너지시스템 등</p>



제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엔에이치(주)



기업현황

설립자본금 10억원 (2006년 3월 설립)

시가총액 1조 4,860억 원 (2021년 2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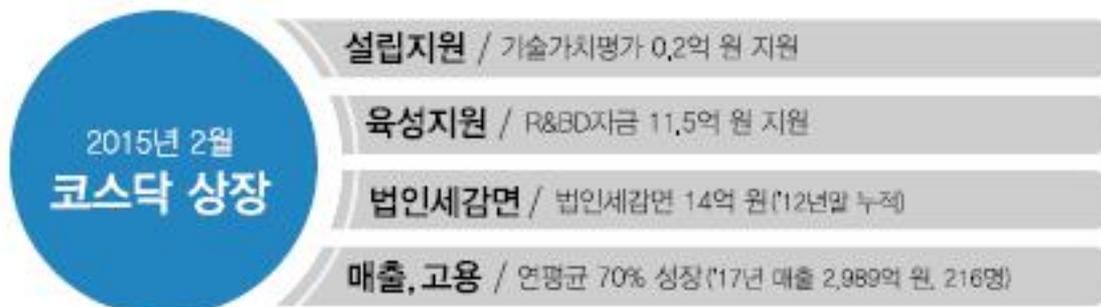
고용인원 10명('06) → 280명('19)

매출액 12억원('06) → 3,845억원('19)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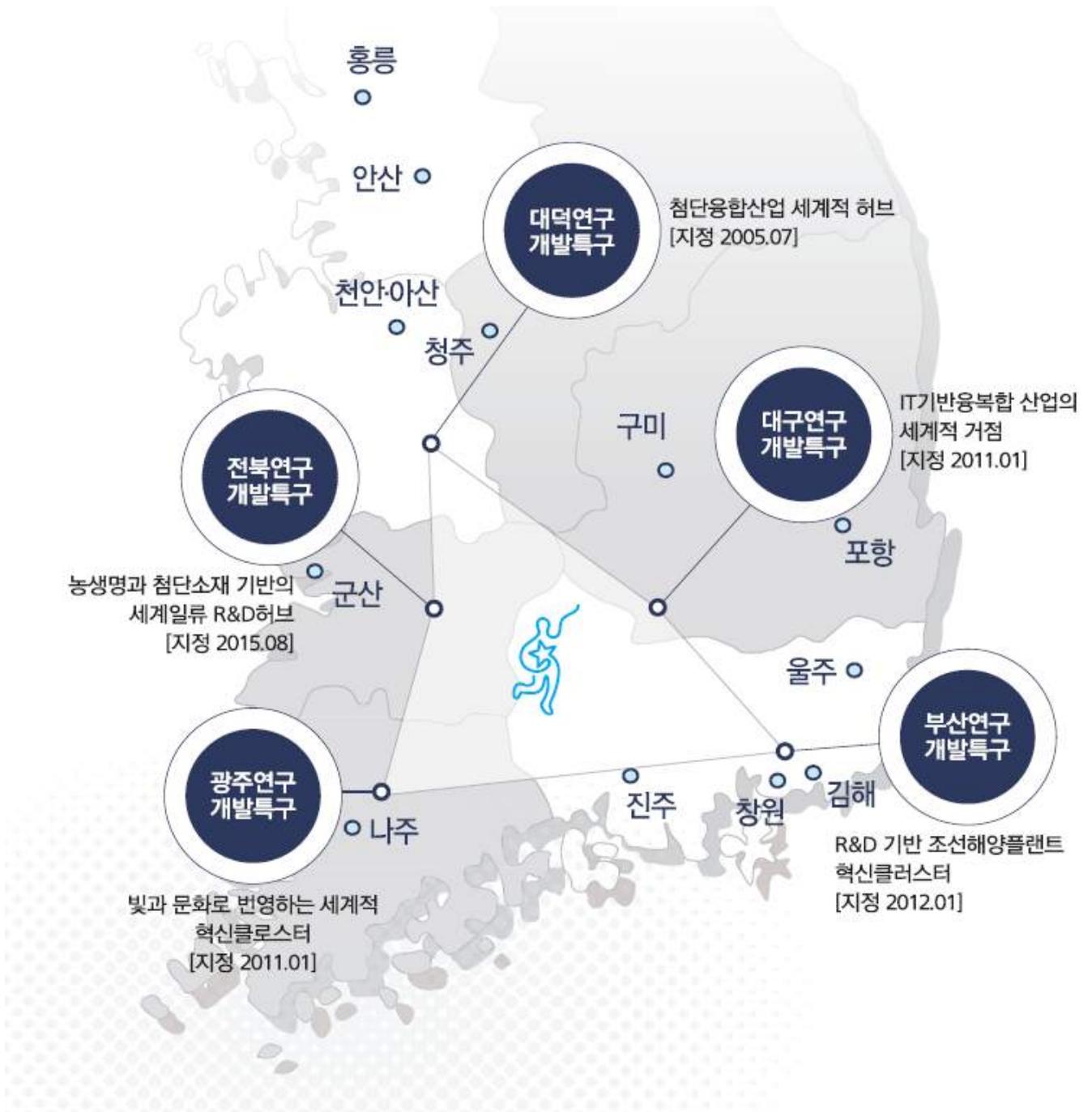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효과



5

한전기술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별 주요 사항

추진 절차		주요 사항
출자기술 선정 및 대상기업 발굴	① 사내 특허 선별·평가	기술성, 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 평가
	② 출자 특허 선정	
	③ 출자 대상기업 발굴	사업화 역량 고려하여 기업 발굴 (MOU 체결)
▽		▽
기술가치평가 및 내부심의	④ 기술가치평가	공공기술가치평가기관 수행
	⑤ 사업심의위원회	한전기술 내부 사업심의 통해 추진 적정성, 리스크 등 심의
	⑥ 합의서 체결	합의서 체결(출자기술, 지분비율, 리스크 방지 조항 등 포함)
▽		▽
추진 계획 협의/확정	⑦ 산자부/기재부 협의	추진 적정성, 공기업 재무 리스크 등 고려 산자부, 기재부 사전협의
	⑧ 이사회 의결	이사회 승인
▽		▽
현물출자 및 연구소기업 전환설립	⑨ 출자 및 법인등기	현물가치 적정성 확인 후 법인등기
	⑩ 연구소기업 지정	과기부가 연구소기업 요건 확인 후 지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 한국전력기술(주)은 연구개발전담부서(전력기술원)를 둔 공공기관으로서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인 ‘공공연구기관’에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를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출연·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2.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
- ② 출연·출자기관 설립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를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2.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
 3. 출연·출자의 금액 및 시기
 4.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6.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